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				
[별표1] 동사무소 설치·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					[별표1] 동사무소 설치·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				
구분	동사무소 명칭	동사무소 소재지	법정동관할		구분	동사무소 명칭	동사무소 소재지	법정동관할	
			전지 역	일부 지역 관할				전지 역	일부 지역 관할
마포구	아현제 1동	아현동 96-2	생략		마포구	아현제 1동	아현동 417-7	생략	
(생략)					(현행과 같음)				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실사보고서

1995. 11. 9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'95. 10. 3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'95. 10. 31.

다. 상정일자: 제3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'95. 11. 9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춘기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지방화, 분권화의 현실에 부합하고 행정수요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코자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서는 확장 신설하고, 기능이

증복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부서는 통·폐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기능이 증복되는 국민운동지원과, 생활체육과를 통·폐합하여 사회진흥과 신설 (안 제6조제4항)

○ 주택개량 행정수요 증가로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과하여 주택재개발 업무 적극 추진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관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업무기능이 증복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없애고 대신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,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민원다발부서였던 주택과를 분과하여 재개발업무만을 전담할 재개발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마

포구의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기구개편이라고 사료됨.

○ 동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실·과등의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없이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신설된 과의 하부조직이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배치와 사무분장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문요지(김종열 위원) : 부서 신설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?

○ 답변요지(이춘기 총무과장) : 기존의 정원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부서 신설로 인한 집기류 및 소모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토론요지 : 수정(안) 가결할 것을 동의

6. 수정(안)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'95. 11. 8. 유남렬 위원 외 1인

나. 수정이유 :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.

다. 수정주요골자

1) “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”을 “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 (안 제6조제4항제1호)

2) “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”을 “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 (안 제6조제4항제3호)

3) 안 제6조제4항제4호는 수정안 제6조제4항제1호에 포함되므로 삭제

4) “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“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

항”으로 수정 (안 제6조제4항제4호)

7. 심사결과 : 수정(안)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수정(안).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5. 11. 8.

제안자 : 총무재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6조제4항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“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”을 “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 (안 제6조제4항제1호)

- “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”을 “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 (안 제6조제4항제3호)

- 안 제6조제4항제4호는 수정안 제6조제4항제1호에 포함되므로 삭제함.

- “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“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 (안 제6조제4항제4호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4항제1호중 “계획수립 및 평가”를 “계획수립 및 시행·평가”로 하고, 동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안 제6조제4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, 제5호를 제4호로 하되 동호 중 “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”을 “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의 육성”으로 하며,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수정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④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	<p>④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삭제)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의안	36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10. 31.
제출자 : 마포구 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지방화, 분권화의 현실에 부합하고 행정수요변화에 신속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,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서는 화장 신설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부서는 통·폐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영성을 제고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운동지원과, 생활체육과를 통·폐합하여 사회진흥과 신설 (안 제6조제4항)

○ 주택개량 행정수요 증가로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과하여 주택재개발 업무 적극 추진 (안 제9조)

3. 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(1995. 8. 4. 법률 제4959호)
제15조, 제102조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

관한 규정(1995. 5. 16. 대통령령 제14647호) 제10조제3항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국민운동지원과·생활체육과”를 “사회진흥과”로 한다.

제6조중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, 동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,
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4.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5.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7.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8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제9조제1항중 “주택과” 다음에 “재개발과”를 추가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②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
 2. 재건축 및 조합주택에 관한 사항
 3.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 4. 시영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
 5.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 6.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·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
 7.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- 제9조중 “제3항 내지 제5항”을 “제4항 내지 제6항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③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2.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제6조제4항 및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국민운동지원과 및 생활체육과의 소관사무는 사회진흥과가, 주택과의 사무중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등에 관한 사무는 재개발과 각각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·운영에 관한조례(1991년 12월 3일 조례 제165호)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생활체육과장”을 “사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총무국)①···	제6조(총무국)①···
.....국민운동지원과·생활체육과사회진흥과
②~③(생략)	②~③(현행과 같음)
④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④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	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	2.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4.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4.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5.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	5.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⑤생활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6.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1.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7.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2.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관한 사항	8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3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	
⑥(생략)	⑤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9조(도시정비국)①..... (신설)	제9조(도시정비국)①..... 재개발과
②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②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	1.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
2. 시영주택의 관리·주택개량·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	2. 재건축 및 조합주택에 관한 사항
3.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	3.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4.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·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	4. 시영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	5.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(신설)	6.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·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
③~⑤(생략)	7.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	③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	1.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
	2.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
	④~⑥(현행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음)

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제안일자 : 1995. 11. 9.

제안자 : 운영위원회

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,

아울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,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(1995. 11. 27.~1995. 12. 3.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

다.

-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(10명)으로 한다.
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~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

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